##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21

발의연월일: 2025. 5. 8.

발 의 자:이만희·구자근·엄태영

서천호 · 강선영 · 최은석

서명옥 • 이성권 • 김기웅

이달희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, CCTV 등 시설이 '25. 3. 안동지역 대규모 산불 등의 재난으로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으나, 현재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함.

특히, 수익사업 불가 및 시유지 내 가설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내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.

이에 규제자유특구 내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시 복구 사업비를 안 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규제특례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84조의2 신설).

##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4조의2(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지원) 규제자유특구에서 산불 등 재 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갖고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의 복구와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복구사업비를 지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4조의2(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
	지원) 규제자유특구에서 산불
	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
	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갖
	고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
	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
	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규제
	자유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
	위하여 복구사업비를 지원한다.
	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
	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
	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
	나,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
	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
	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
	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
	<u>아니한다.</u>